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미납부 및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계약체결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미납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인지세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 영수증의 복사본 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기재금액	비고
부동산 분양계약서	계약체결일	분양대금(총 공급대금)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분양권 전매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일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	

### ◆ 인지세 납부금액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당 아파트 해당 과세)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이하	7만원	-	-

### ◆ 가산세 개정사항 기간별 최대 300% 부과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 '21.1.1 부터 적용)

납부기한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가산세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구입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구입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li> <li>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li> <li>③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서비스 클릭 후 구매 선택</li> <li>④ 납부정보 입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 : 인지세 납부</li> <li>2.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등 소유권이전</li> <li>3. 금액 : 150,000원</li> <li>4. 건수 : 1건</li> </ol> </li> <li>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 후 출력</li> <li>⑥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계약 전 복사본 제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li> <li>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 : 인지세 납부</li> <li>2.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li> <li>3. 매수 : 1매</li> <li>4.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재</li> </ol> </li> <li>③ 결제 (현금납부만 가능)</li> <li>④ 전자수입인지 발급</li> <li>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계약 전 복사본 제출)</li> </o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할 경우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li> <li>■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시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li> </ul>	